

#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

회사명	BNK 자산운용 주식회사
제정일자	2021년 05월 20일

## 제 1 조(제정 목적)

이 정책은 BNK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계법령 및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바탕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절 정보차단벽(Chinese Wall)

### 제 2 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법 제 174 조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② 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판단을 위해 회사의 금융투자업등 업무와 관련있는 법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식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

- 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 ③ 제 1 항 제 2 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4 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외 총액과 증권외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 ④ 제 1 항 제 3 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1 개월이 경과한 정보 중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 ⑤ 임직원은 업무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판단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 ⑥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하여 부문별 또는 정보별 책임자는 동 사실을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통보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제 3 조(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하여

야 한다.

1.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2. 금융투자업의 종류(자본시장법 제 77 조의 3 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된 업무를 포함한다) 및 경영·부수 업무
3. 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4.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②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 1 항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재산운용 부문
2. 투자일임재산운용 부문
3. 고유재산운용 부문
4.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부문
5. 기타 회사에서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문

#### **제 4 조(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1. 자본시장법 제 174 조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4. 고유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5.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관련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제 5 조(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운영)**

① 회사는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으로 준법감시부서를 지정한다.

② 회사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금융투자업규정 제 4-6 조 제 2 항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준법감시인을 지정한다.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정보교류통제 업무 중 일부를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④ 회사는 제 1 항부터 제 3 항에 따른 임직원에게 대해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을 부과함에 있어 보다 강화된 준수 의무를 적용하여야 한다.

#### **제 6 조(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 3 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 4 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들은 제 2 항 내지 제 5 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보고 및 승인 절차,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 관련 기록의 유지·관리 등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 **제 7 조(상시적 정보교류차단)**

①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 40 조의 3 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무 공간의 분리
2.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4.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2.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의 기한을 정한 편입

## 제 8 조(예외적 교류의 방법)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 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 1 항에 따른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의 제공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에 대한 일시적 접근 권한 부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의 기한을 정한 편입

## 제 9 조(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 2 절 사외 정보교류 차단

### 제 10 조(계열회사 등 제 3 자와의 정보 교류)

① 회사는 계열회사(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6 조 제 10 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제 3 자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제 1 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해상충 우려 및 내부통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 등 제 3 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내부통제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회사가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는 제 3 자의 범위를 특정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 3 자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 3 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금융투자업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 3 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제 11 조(복합점포 설치·운영)**

①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 3 자와 함께 투자자, 그 밖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상담·투자권유·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계열회사 등 제 3 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출입문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회사별 사무공간은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고,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한다.
2. 회의실, 상담실등 상담공간을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영업소명 포함)의 별도 표기 등을 통해 고객이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복합점포에서 고객이 상담·자문 목적으로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사전에 지정한 기간 동안 계열회사 등 제 3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 12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전송요구)**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 제 1 항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동법 제 33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 13 조(임직원의 겸직)**

회사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열회사 등 제 3 자의 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제 3 절 이해상충관리**

### **제 14 조(투자자이익 우선)**

- ① 투자자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②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③ 모든 투자자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제 15 조(이해상충문제의 차단)**

-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투자자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6 조(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 ①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 17 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 ① 임직원은 회사와 투자자간 또는 투자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책은 2021년 05월 20일부터 시행한다.